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실버문화방송콘텐츠 제작지원 ○ 사업목적 : 실버세대를 포함해 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 및 공공성 강화 콘텐츠 발굴, 육성 ○ 사업기간(협약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협약일 ~ 2019. 10. 31)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1) 실버콘텐츠(교양·예능) 2) 실버콘텐츠(다큐) 3) 공공콘텐츠(다큐) ○ 지원규모 : 총 8개 과제 내외, 1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버콘텐츠(교양·예능) : 작품당 1.5억 원 2) 실버콘텐츠(다큐) : 작품당 1억원 3) 공공콘텐츠(다큐) : 작품당 1.5억 원 ○ 지원대상 : 방송영상독립제작사(*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사) 			
구분	실버콘텐츠(교양·예능)	실버콘텐츠(다큐)	공공콘텐츠(다큐)
지원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사)		
공모 주제	- 제2의 인생, 가족, 건강 등 실버 세대 및 가족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 *콘텐츠에서 실버 세대가 중심이 되어야 함.		- 임시정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운동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애국열사의 자주독립정신 계승 발전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
지원 규모	총 4.5억원	총 2억원	총 4.5억원
지원 한도	최대 1.5억원/작품	최대 1억원/작품	최대 1.5억원/작품
지원 기간	협약일 ~ 2019. 10. 31		
완성작 제출분량	- 프로그램 전편(50분 이상 분량) ※ 연작일 경우 연작물 전체		
자부담 비율	총 제작비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 창업 3년 이하 기업이 지원금 50백만원 이하 지원사업 수행 시 사업자부담금 면제		
2019년도 주요 변경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콘텐츠' (다큐) 부문 신설 - 협약과제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의무사용은 물론, 최저임금 및 스태프 개별계약 (제작사-스태프 간 개별계약, 하도급업체-소속스태프 간 개별계약)을 준수해야함 - 접수마감일 기준 방영중이거나 제작진행률 50% 초과 작품은 신청불가 - 신규 직고용 내부인력 인건비 국고지원금 편성 가능(30%) - 이행보증보험증권 전면 폐지, 1차 서면평가 통과작에 한해 기업 신용정보 등록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을 위한 4대보험 적용되는 신규 직고용(신입/경력, 프로젝트 참여기간)인력에 한해 참여비율에 따라 국고지원금 30%이내로 내부직원 인건비(정규 계약 등) 편성가능(단, 4대보험 비용은 자체부담) - 자부담금으로 내부참여 인력의 인건비 편성 가능(회사대표 및 수행책임자는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만 가능) - 협약일 이전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국고지원금/자부담금) 편성 불가 - 접수마감일 기준 방영중(국내외 지상파, 케이블, 온라인, 극장 등 모든 매체)이거나 제작진행률 50% 초과 작품은 신청불가 - 동일 작품으로 타 사업 및 부문 중복지원 불가 - 선정된 사업자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취지에 맞도록 의무적 사용해야하며,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 스태프 개별계약(제작사-스태프, 하도급사-스태프 등)을 체결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방송표준계약서 사용 실태 점검(중간/결과평가 등, 법무법인 활용) • 표준계약서 및 최저임금 미준수 사항 발생 시 2차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시행 예정 			

[최저임금 준수 가이드]

- 스태프 계약서에 제작기간, 예상 근로시간, 임금(대금)을 명시해야함
- 임금(대금) 지급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총 임금(대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산정되는 금액이 최저임금(8,350원) 이상이어야 함
- 실제 근로시간은 제작 현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증감할 수 있어, 총 임금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x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해야함
- ※ 주휴수당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 포함

- 제작인력의 안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해 해당상황 발생 시(국외출장은 필수) 상해 및 여행자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관련비용은 사업비 편성 가능
- 중간평가를 통해 과제수행 적정성 점검 후 2차 지원금 지급 결정
- 완성작/결과보고서는 협약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 체결
- 결과평가는 협약종료 후 진행되며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 산출물 등을 바탕으로 적정하고 성공적인 사업수행 여부에 대해 판단함
- 선정 이후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실태 점검 예정(중간/결과평가)
-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인격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함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성희롱·폭력 및 노무 관련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함
- 수행기관은 협약종료 후 1년 이내에 완성작의 국내·외 판매, 방영, 계약, 국제상출품 등 지원작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차기작 지원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작은 사업안내 및 홍보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언론 및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홍보 관련 자료 제공의 의무가 있음
- 지원작 개발 및 상용화, 해외수출 등을 위한 간접사업에 대해 진흥원의 요청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9.2.1.(금). ~ 2019.2.27.(수). 15:00까지
- 접수기간 : 2019.2.12.(화). ~ 2019.2.27.(수). 15:00까지

신청방법

-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사업공고 페이지 열람,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함
 -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해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공고문 하단의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e나라도움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옛지 미지원), 크롬 43+이상

【신청서류 제출 방법】

- 제출 형태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첨부/**주관기관명_과제명.zip**
-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필수 서류는 반드시 50MB 이하로 조정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업로드 (50MB 이상은 시스템 업로드 안됨)

- 본 지원사업 공고에서 업체별 지원 가능한 과제 수는 **지원분야별 1개만 가능**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 및 붙임 서류

붙임 1) 분야별 작품내용

- 2) 최근 5년간 수행 실적서
- 3)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5)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 6) 성폭력 예방/근절 서약서
- 7)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조회 동의서
 * 기업신용평가가 서류평가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무제표 제출은 불요함
- 8)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지역 확인용)
- 9) 4대보험 납입증명(일자리 창출 확인용, 2017년 12월~2018년 12월(총 13개월))

별첨 1)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탈락,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발생 시 차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절차 진행
- 실버문화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의 모든 분야는 상용화(방영)가 필수임. 사업신청서에 방영 계획 및 상용화 계획 기입 필수
- 사업자등록증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 에이전시,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 등의 업종이 포함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필수 제출. 미등록업체의 경우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등록 후 제출
 (문의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담당자, 02-2016-4133)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발급안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발급안내】

- 작성방법 안내, 서식 다운로드 : [바로가기](#)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담당자
 (☎ (044)203-3233/ 팩스: (044)860-4868/ 메일: kwakd1@korea.kr)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3월 중순)-발표평가 및 종합심사(3월 말)(종합심사의 시 사업비조정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2차 발표평가 시 발표자료(PPT, 작품영상 등)를 평가당일 USB에 저장해 제출해야 함(추후 일정 통보, 다큐멘터리는 작품영상 제출 필수)
 * 작품영상 : 작품에 대한 '트레일러'를 비롯하여 작품의 이해도 향상 및 제작에 대한 준비 등을 보여주는 테스트영상 (현장이미지 등이 포함된 축약된 형태의 러프컷 가능)
-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각 부문별로 1차 서면평가(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피칭 및 질의응답)를 거쳐 최종 선정
- 1차 서면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작품을 2차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2차 발표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작품을 지원 후보로 선정

- 지원 후보 중 1차 서류평가결과 40%와 2차 발표평가결과 6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금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 2018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작(다큐)이 본 사업에 신청할 경우 5점 가산점 부여
 - ※ 불가피한 사유로 선정된 과제의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 추진
-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및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평가기준
[실버콘텐츠] 교양-예능 / 다큐

구분	주요 평가요소	배점
1차평가 : 서면평가		
수행기관 (10점)	1. 수행관리체계 구축 ▶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5
	2. 기관전문성 ▶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5
참여인력 (10점)	1. 참여인력 확보 ▶ 적정 참여인력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	3
	2. 참여인력 참여율 ▶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4
	3. 참여인력 전문성 ▶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3
사업비 (10점)	1. 사업비 규모 ▶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3
	2. 사업비 조달계획 ▶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투자 유치 계획 등	4
	3. 국고지원금 편성 ▶ 국고지원금 편성내역의 사업목적 적합 여부	3
과제기획력 (50점)	1. 과제이해도 ▶ 실버콘텐츠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및 실버문화의 특성 반영	10
	2. 독창성 ▶ 기획안의 주제, 소재, 기획 측면에서의 차별성/참신성	20
	3. 완성도 ▶ 실버콘텐츠의 수준높은 콘텐츠 및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	20
과제내용 (20점)	1. 대중성 ▶ 실버콘텐츠에 대해 실버세대 및 일반대중이 느끼는 대중적 공감대 형성	10
	2. 경쟁력 ▶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실버 콘텐츠가 가지는 경쟁력	10
합 계		100
2차평가 : 발표평가		
수행기관 (11점)	1. 재무건전성 ▶ 기업신용데이터 정보조회 (배점 1점)	1
	2. 추진의지 ▶ 수행책임자의 추진의지 명확성	10
과제내용 (10점)	1. 대중성 ▶ 실버 콘텐츠에 대해 일반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5
	2. 경쟁력 ▶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실버 콘텐츠가 가지는 경쟁력	5

2차평가 : 발표평가		
과제기획력 (20점)	1. 과제이해도 ▶ 실버콘텐츠 사업목적 부합 여부(목표 타겟, 과제내용 등)	5
	2. 독창성 ▶ 실버콘텐츠 기획안의 주제, 소재, 기획 측면에서의 차별성/참신성	10
	3. 완성도 ▶ 실버콘텐츠의 수준 및 기획안의 실현성, 구체성 확보여부	5
기대성과 (40점)	1. 경제사회적 성과 ▶ 기대되는 매출규모 및 콘텐츠 주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환기, 저작권 등	10
	2. 상용화 가능성 ▶ 방영, 본편 제작, 상용화 계획 등 발전가능성 - 방영(필수) 포함한 상영회 또는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한 방영 홍보 등	20
	3. 기대 일자리 창출 실적 ▶ 과제 수행에 따른 정규·계약직, 프리랜서 등 일자리 창출 기여 정도	10
사회적가치 (19점)	1. 일자리 창출* ▶ 국가 최우선 시책인 일자리 창출 기여정도	4
	2. 성폭력 근절 ▶ 참여인력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 확보 여부	1
	3. 지역소재 ▶ 지역 소재 기업 여부(본사 기준) : 총 2점 ※서울 0점, 인천 및 경기 1점, 그 외 지역 2점	2
	4. 공정상생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최저임금 준수 등 공정상생 가치 부합정도 : 총 5점	5
	5. 인권경영 ▶ 참여인력에 대한 인권보호 체계 확보 여부 : 총 2점	2
	6.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자 여부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처분 사실 여부	5
합 계		100

[공공콘텐츠] 다큐멘터리

구분	주요 평가요소	배점
1차평가 : 서면평가		
수행기관 (10점)	1. 수행관리체계 구축 ▶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5
	2. 기관전문성 ▶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5
참여인력 (10점)	1. 참여인력 확보 ▶ 적정 참여인력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	3
	2. 참여인력 참여율 ▶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4
	3. 참여인력 전문성 ▶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3
사업비 (10점)	1. 사업비 규모 ▶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3
	2. 사업비 조달계획 ▶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투자 유치 계획 등	4
	3. 국고지원금 편성 ▶ 국고지원금 편성내역의 사업목적 적합 여부	3

과제기획력 (50점)	1. 과제이해도 ▶ 공공콘텐츠 사업목적 부합 여부(공고에 제시된 주제에 맞는 콘텐츠 주제 선정 및 과제 내용 등)	10
	2. 독창성 ▶ 공공콘텐츠의 주제, 소재, 기획 측면에서의 차별성/참신성 - 가치 있는 화두의 설득 및 전달을 위한 기획구성, 작품성 등 - 임시정부, 3.1운동 100주년 취지반영	20
	3. 완성도 ▶ 공공콘텐츠의 수준높은 콘텐츠 및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	20
과제내용 (20점)	1. 대중성 ▶ 공공콘텐츠에 대해 일반대중이 관심을 가지고 높은 주제의식에 공감하는 정도	10
	2. 경쟁력 ▶ 공공콘텐츠가 다큐멘터리 시장에서 가지는 경쟁력 여부	10
합 계		100
2차평가 : 발표평가		
수행기관 (11점)	1. 재무건전성 ▶ 기업신용데이터 정보조회 (배점 1점)	1
	2. 추진의지 ▶ 수행책임자의 추진의지는 명확하고 확고한가?	10
과제내용 (10점)	1. 대중성 ▶ 공공콘텐츠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일반대중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5
	2. 경쟁력 ▶ 공공콘텐츠가 다큐멘터리 시장에서 가지는 경쟁력 여부	5
과제기획력 (20점)	1.과제이해도 ▶ 공공콘텐츠로서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목표 타겟, 과제내용 등)	5
	2. 독창성 ▶ 공공콘텐츠만이 지니는 주제, 소재, 기획 측면에서의 차별성/참신성	10
	3. 완성도 ▶ 공공콘텐츠의 수준 및 기획안의 실현성, 구체성 확보여부	5
기대성과 (40점)	1. 경제사회적 성과 ▶ 기대되는 매출규모 및 콘텐츠 주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환기, 저작권 등	10
	2. 상용화 가능성 ▶ 방영, 분편 제작, 상용화 계획 등 발전가능성 - 방영(필수) 포함한 상영회 또는 방영 홍보 등	20
	3. 기대 일자리 창출 실적 ▶ 과제 수행에 따른 정규·계약직, 프리랜서 등 일자리 창출 기여 정도	10
사회적가치 (19점)	1. 일자리 창출* ▶ 국가 최우선 시책인 일자리 창출 기여정도	4
	2. 성폭력 근절 ▶ 참여인력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 확보 여부	1
	3. 지역소재 ▶ 지역 소재 기업 여부(본사 기준) : 총 2점 ※서울 0점, 인천 및 경기 1점, 그 외 지역 2점	2
	4. 공정상생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계획, 최저임금 준수 등 공정상생 가치 부합정도 : 총 5점	5
	5. 인권경영 ▶ 참여인력에 대한 인권보호 체계 확보 여부 : 총 2점	2
	6.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자 여부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처분 사실 여부	5
합 계		100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최우선 시책인 일자리 창출 기여정도 평가 - 본 과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계획보다는, 본 과제수행 외 부서를 포함한 콘텐츠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려는 방침임 - 전년(2018년)대비 증가한 일자리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 이상 증가: 4점 ▶ 9명~5명 증가: 3점 ▶ 4명~1명 증가: 2점 ▶ 동일: 1점 ▶ 감소: 0점
----------------	--

지원금 지급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최종 선정된 과제 대상 협약설명회 개최 이후 협약 체결
 - 협약체결 후 지원금은 2회 분할하여 교부(가상계좌)
 - 1차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교부 (가상계좌)
 - 2차 지원금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20% 교부 여부 결정(가상계좌)

구분	공통
추진일정	①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3월 말) ② 중간평가(7월 초) ③ 2차 지원금 지급(7월 중순) ④ 협약종료(10.31) ⑤ 결과평가(11월 초)
비 고	총사업비(국고, 자부담)는 협약체결 이후부터 집행가능

- 자체부담금(해당 시)
 - 선정된 사업자는 총 제작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자체부담금 편성의무
 - ※ 예시) 총 제작비 1.2억원인 경우 자체부담금은 최소 1.2천만원 이상 편성
 - 자체부담금은 변경이 어렵고 선집행 원칙을 준수해야함을 고려하여 예산집행 계획 수립
 - ※ 자체부담금에 내부인건비 편성 가능(제작참여 조건으로 회사대표 및 수행책임자도 가능하며 참여비율에 따라 인건비 편성)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방법】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목이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지원금 집행
- 자금집행 시 집행예정 자금 중 세목별 자부담 비율 이상의 금액을 자부담으로 집행한다면 나머지 금액을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참가기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

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문의처

- 사업담당자 연락처 : 방송본부 방송산업팀
- 김슬기 대리 ☎(061)900-6333, e-mail : star@kocca.kr
-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02-6676-5100)

※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제목 : 2019년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사업설명회
- 일시 : 2019. 2. 14.(목) 13:30 ~ 17:00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본사 2층 콘텐츠홀
- 찾아오시는길
 - 지하철 : 디지털미디어시티역(6호선) 2번 출구, 건너편 정류장에서 7711, 7730번 버스 승차 후 누리꿈스퀘어 앞 하차, 도보 2분 / 공랑철도 9번 출구 도보 15분(MBC신사옥 맞은편)
 - 버스 : 171, 271, 470, 710, 6715, 7013A, 7013B, 7019, 7711, 7715, 7730 9711번 버스 승차 후 누리꿈스퀘어 앞 하차, 도보 2분(MBC신사옥 맞은편)



※ 당일 행사로 인해 다소 혼잡스러울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

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과 주관기관의 책임임
- 주관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짐
-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 제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제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지원금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참여인력이 신청일 기준 성폭력 범죄 이력 또는 관련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경우도 포함).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참여인력을 사업에서 배제하며, 수행책임자가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단,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 공표 후,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함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